

■ 최신 법령 ■

[자원 · 에너지 · 환경]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

김도요 변호사 | 배지영 변호사

2012년 5월 2일 제305회 국회(임시회) 본회의에서 그간 도입여부를 놓고 찬반논란이 거셌던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」이 통과되어, 5월 14일 공포되었습니다. 이 법률은 국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대해서 배출권을 할당하고, 할당받은 업체는 할당된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며, 할당량에 미달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그 미달량만큼의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규제되는 온실가스의 범위

현재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정해진 이산화탄소(CO₂), 메탄(CH₄), 아산화질소(N₂O), 수소불화탄소(HFCs), 과불화탄소(PFCs), 육불화황(SF₆)과 동일함. 현재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과 관련하여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삼불화질소(NF₃)는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이나 이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, 포함되지 않음.

이산화탄소 상당량톤은 배출권의 거래와 관련해서만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, 할당 및 MRV 등에 있어서 상당량톤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 현재 목표관리제는 교토의정서와 같이 IPCC 2차 보고서의 100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음.

2. 배출권 할당대상 및 할당(제2장)

가. 배출권의 할당대상업체 (제5조, 제6조, 제8조 내지 제10조)

- (1)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른 관리업체(이하 "관리업체")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,000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이상인 업체이거나, 25,000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. 즉 기업 단위의 배출량이나 개별 사업장의 배출량 기준을 모두 규제하고 있음.
- (2)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선택적 진입권(Opt In)이 인정됨.
- (3) 배출권할당위원회가 할당대상이 되는 부분 및 업종에 관한 사항, 부분별, 업종별, 이행년도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을 할당계획에 포함하여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고, 주무관청이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지정, 고시하여야 함.
- (4) 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계획기간 중이라도 할당량을 고시할 수 있음.

나. 배출권 할당의 주무부처 및 기관, 계획기간(제2조, 제5조, 제6조, 제12조, 부칙 제2조)

- (1) 할당계획, 시장안정화 조치, 인증, 상쇄, 시장연계 등 주요 사항은 배출권할당위원회에서 결정.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으로, 교육과학기술부, 농림수산식품부, 지식경제부, 환경부, 국토해양부, 국무총리실, 금융위원회 등과 다른 전문위원 등이 참여할 수 있음.
- (2) 개별적 할당은 기업이 제출한 할당신청서를 바탕으로 각 주무관청이 할당계획에 따라 하여야 할 것임.
- (3) 계획기간은 5년이되, 보고, 검증, 인증 및 그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이 일어나는 이행연도는 1년으로 설정. 다만, 1차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3년간, 2차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3년간으로 설정.
- (4) 1차 계획기간 및 2차 계획기간 중에는 무상할당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이어야 함.

다. 배출권의 할당(제12조부터 제15조)

- (1) 주무관청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도록 하고,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.
- (2)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생산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탄소누출(Carbon Leakage)에 대비.
- (3) 조기감축실적은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에 한정. 다만, 수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음. 현재 목표관리제에서는 지경부 K-CER 감축사업,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,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, 국토해양부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등에 조기 행동을 한정하고 있음.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목표관리제 및 그 이전의 감축 실적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이 필요.

라. 배출권 할당의 조정 및 취소(제16조 및 제17조)

- (1)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거나, 계획기간 중 시설의 신설·증설, 생산품목의 변경 등의 경우 주무관청은 직권으로 또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거나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음.
- (2)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되거나 할당 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등은 주무관청이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음.

3. 배출권의 거래(제4장)

- (1) 할당받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되, 상쇄단위가 배출권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, 상쇄단

- 위가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함(제19조)
- (2) 할당받은 관리업체에 거래참여자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고, 거래계정을 등록하면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. 다만, 외국법인이나 개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거래 관련 세부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(제19조, 제20조).
 - (3)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 이전의 효력은 배출권등록부에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발생함(제21조 내지 제23조).
 - (4)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정보이용금지 및 부정거래행위에 관하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.
 - (5) 주무관청은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.

4.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·검증 및 인증, 제출(제24조 내지 26조)

- (1)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가 종료하면 3개월 이내에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외부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고, 주무관청은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함.
- (2)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함.

5. 배출권의 예치, 이월·차입 및 상쇄(제28조부터 제31조까지)

가. 배출권의 예치, 이월, 차입(제28조)

- (1)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남은 배출권 등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이행연도로 예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.
- (2) 특정 이행연도에 제출할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차입할 수 있음.

나. 배출권의 상쇄(제29조부터 제31조)

- (1) 할당 대상업체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감축량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인증절차를 거쳐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음.
- (2) 외부사업온실가스 감축량은 (i) UNFCCC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(ii) 국내외 부분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MRV가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을 통한 감축량으로 넓게 규정되어 있으나,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과 절차를 제한하고, 주무관청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정하는 방식으로 통제
- (3) 배출권 등록부와 별도로 상쇄등록부를 별도로 관리

6. 과징금의 부과(제33조)

- 할당 대상업체가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.

7. 금융·세제상의 지원(제35조)

-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금융·세제상의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.

8. 다운로드 : [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\(법률 11419호, 2012. 5. 14 공포\)](#)